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

매 년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흐르는 물처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光陰如流(광음여류)를 떠올리게 된다. 2016년 丙申年(병신년)의 시작을 알리는 읊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세월의 흐름에 문득 놀라는 이가 비단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다사다난이라는 표현도 매년 듣는 말이지만, 해가 갈수록 그 의미가 좀 더 강렬하게 와 닿는 것은 우리가 세월의 흐름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 해의 성과를 마감하게 되는 이번 송년호에서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의 의미

축산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다. 세무관청에서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사업자현황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 즉, 사업자현황신고를 통해 세무관청이 사업자의 매출 및 매입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소득세 신고의 매출액으로



임기완
공인회계사 / 세무사
진일회계법인 이사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와 주요 신고내용

『소득세법 제78조』에서는 사업자현황신고의 대상과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납세조합가입자, 복권·담배·연탄·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보험모집인을 제외한 모든 면세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한 해의 연간수입금액을 다음해 2월 10일 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라면, 내년 1월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장이 2곳 이상일 경우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며,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폐업신고서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과세·면세 겸업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란에 내용을 기재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추가적인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현황신고를 할 때는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명세, 각종 증빙서류(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 비용내역, 시설현황 등의 내용을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종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세무관청에서 거래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부터 집계하고, 이를 근거로 미발행 판매금액을 적절한 기준으로 산출하여 계산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요령과 유의사항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세무서에서 신고대상

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사업자들은 세무서에서 받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를 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전자신고하는 방법을 동영상 등으로 안내하고 있고,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비롯한 각종 서식을 제공하고 있어, 직접 신고하는 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작성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 발행한 계산서를 매출처별로 집계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사료 등의 매입 시 수취한 계산서를 매입처별로 집계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각 항목의 금액을 기입하면 된다. 한편,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축산농가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고, 기한을 어길 시에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협의신고를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신고기간 내에,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 다시 한 해가 훌쩍 지나서 송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날아가는 화살 같은 세월의 빠른 흐름 속에서, 본연의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양계농가들도 올 한 해를 무사히 마감하고 다가오는 한 해에 대해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계**